

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 2021-0042호

「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정에 따라 공인기관 인정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문서를 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2월 3일

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

「측정결과의 불확도 추정 및 표현을 위한 지침」 등 17종의 지침 제정(안) 행정예고

1. 제정 이유

「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의 제정에 따라 공인기관 인정을 위해 관련된 국제기준의 해석기준 또는 지침을 제공하여 공인기관의 신뢰성 증진 및 인정기구의 업무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 내용

○ 「측정결과의 불확도추정 및 표준을 위한 지침」

- 작업현장에서부터 기초연구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측정에 대한 불확도를 평가하고 표현하는데 적용되는 지침

○ 「의사결정 규칙 및 적합성 진술에 관한 지침」

- 2019년에 발행된 ILAC G8:09/2019 - Guidelines on Decision Rules and Statements of Conformity를 기초로 기술적 내용 및 국제기준의 구성을 변경하지 않고 작성한 지침

○ 「교정, 측정능력 산출 및 유지관리 지침」

- 교정을 수행하는 공인기관이 항목별 또는 유형별 교정, 측정능력을 산출하여 유지·관리하기 위해 적용되는 지침

○ 「시험분야 측정불확도 추정에 관한 지침」

- 다양한 기술분야에 대한 불확도를 계산하는 해석과 지침

○ 「**KS Q ISO/IEC 17025** 해설서」

- 공인시험·교정기관 인정 지원을 위해 KS Q ISO/IEC 17025 적용을 위한 해설

○ 「**KS Q ISO/IEC 17020** 해설서」

- 공인검사기관 인정 지원을 위해 KS Q ISO/IEC 17020 적용을 위한 해설

○ 「환경평가 수행을 위한 지침」

- 측정분야별 환경기준에 따라 신청기관 또는 공인교정기관이 측정환경을 적정하게 유지 관리하는지에 대한 적합 여부를 평가하는데 적용하는 지침

○ 「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」

- 국가측정표준과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 사용하는 측정기의 교정대상 및 교정주기를 설정하는데 적용하는 지침

○ 「**화학적 시험방법의 유효성 확인을 위한 지침**」

- 시험기관에서 시험방법을 적용하기에 앞서 시험방법의 유효성 확인을 위해 적용하는 지침

○ 「**KS P ISO 15189 해설서**」

- 공인메디컬시험기관 인정 지원을 위해 KS P ISO 15189 적용을 위한 해설

○ 「**공인기관의 기술기록 관리에 관한 기본지침**」

- 공인기관에서 인정받은 범위의 결과를 포함하는 성적서의 발행관련 업무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정보시스템 및 IT환경이 준수해야하는 기본 지침

○ 「**ENERGY STAR® Program 공인기관을 위한 지침**」

- 미국 환경청(US EPA) 에너지스타 프로그램의 전기·전자제품시험 인증을 받기위한 기관에 적용되는 지침

○ 「**측정결과의 소급성 유지를 위한 지침**」

- 측정 및 시험장비의 교정 및 국제표준 또는 국가표준으로부터 측정의 소급성 입증을 위한 인정절차에 적용하는 지침

○ 「**KS P 15195 해설서**」

- 임상검사/의학 분야에서의 기준 측정기관의 KS P 15195 적용을 위한 인정기구의 해설을 제공

○ 「**KS Q ISO/IEC 17043 해설서**」

- 공인숙련도시험 운영기관 인정지원을 위해 KS Q ISO/IEC 17043 적용을 위한 해설

○ 「KS A ISO 17034 해설서」

- 공인표준물질 생산기관 인정지원을 위해 KS A ISO 17034 적용을 위한 해설

○ 「KS Q ISO/IEC 17065 해설서」

- 공인제품인증기관 인정지원을 위해 KS Q ISO/IEC 17065 적용을 위한 해설

3. 의견 제출

「측정결과의 불확도 추정 및 표현을 위한 지침」 등 17종의 지침 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적합성평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 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라. 보내실 곳

- 주소 : (27737)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

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평가과

- 전화 : 043 - 870 - 5496

- 팩스 : 043 - 870 - 5679

- 이메일 : kok0816@korea.kr